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희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05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0.

발 의 자:박희승·민병덕·김정호

윤준병 · 김준혁 · 서영교

정준호 • 박상혁 • 백혜련

안호영 · 김영호 · 강유정

전진숙 · 김한규 · 정진욱

소병훈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감사원, 검찰·경찰 및 그밖의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이내에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의무화하고 있으며 징계는 법률이 아닌 관련 지침에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 만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, 지역경제 발전, 주민복리 증진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·운영되는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현행법 에 따라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통보 의무의 범위가 제한되어 징계가 누락 될 가능성이 있음.

특히 성비위 사건은 소속기관에서 뒤늦게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,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이미 연장된 바 있음.

또한 지난 5월,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중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.

이에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고,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·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,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4 및 제34조의2).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2절에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의4(징계 등) ①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.
 - ②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(授受), 공금의 횡령(橫領)·유용(流用)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 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, 공금의 횡령액·유용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.
 - ③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.
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: 10년
 - 가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 지행위
 - 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
 - 다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

- 아동 · 청소년대상 성범죄
- 라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- 마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 토킹범죄
- 2. 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 · 유용, 채용비리: 5년
- 3. 그 밖의 사유: 3년

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"을 "감사원, 검찰·경찰 및 그밖의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"으로, "기관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"를 "사건에"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직무와 관련된 사건
- 2.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
 - 가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 지행위
 - 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
 - 다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- 라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- 3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

킹범죄

- 4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·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 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징계시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 및 징계부과금 사유의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/u>	제15조의4(징계 등) ① 출자·출
	연기관의 장은 정관 또는 내부
	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
	속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.
	②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소
	속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
	<u>수(授受), 공금의 횡령(橫領)·</u>
	유용(流用)을 이유로 징계를 하
	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
	금품 및 향응 수수액, 공금의
	<u>횡령액·유용액의 5배 이내의</u>
	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
	<u>수 있다.</u>
	③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
	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
	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
	지나면 하지 못한다.
	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
	<u>해당하는 사유: 10년</u>
	가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
	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
	에 따른 금지행위
	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

제34조의2(수사기관 등의 수사 제34조의2(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・종료 통보) 다음 각 관은 출자・출연 기관의 임직 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 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 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 일 이내에 출자·출연 기관의 |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- 1. 감사원
- 2. 검찰 · 경찰 및 그 밖의 수사

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다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| 제2조제2 호에 따른 아동 · 청소년대 상 성범죄

라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 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
마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 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2. 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 · 유용, 채용비리: 5년 3. 그 밖의 사유: 3년

등 개시・종료 통보) 감사원,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| 검찰·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・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-----

건에-----

- 1. 직무와 관련된 사건
- 2.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

기관

3. 지방자치단체의 장

- 위와 관련된 사건
- 가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

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 에 따른 금지행위
- 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

 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

 따른 성폭력범죄
- 다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 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 상 성범죄
- 라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 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- 3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 른 스토킹범죄
- 4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
 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
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
 대한 불응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